

강화된 연구윤리

- 현재와 미래 과제

2019년 9월 21일(토)

정기학술대회

KAFLE 편집위원장 표경현

한국연구재단의 윤리규정 강화 방향

- ▶ 학술지 평가 시 반영되는 정량평가 측면
 - 미충족 시 감점
- ▶ 학술지 평가 시 반영되는 정성평가 측면
 - 정성평가 측면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

출처: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설명회(2018. 4.18)

정량평가

- ▶ 연구윤리서약서 날인 - 이미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어 가산점 부여받음
- ▶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위원 지명 - 개정 편집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됨
- ▶ 연구윤리교육 실시 - 전체 회원대상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함

정성평가

- ▶ 표절방지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권장 - KCI 논문유사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
- ▶ 표절사례 발생 처리 방안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
 - 사전: 개정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됨
 - 사후: 처리 과정을 학술지 평가에서 보고함

정성평가

▶ 연구물 출판 시 연구자 소속 및 직위 명기

-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후속조치에 대한 요청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에 명시하였으며, 2019년 26권 1호 이후 소속 및 직위를 명기하고 있음

<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(안) >

대상		표시할 사항
대학 소속	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	성명/ 00대학/ 교수
	대학 소속 강사	성명/ 00대학/ 강사
	대학 소속 학생	성명/ 00대학/ 학생
	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	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
초중등 학교 소속	초중등학교 소속 학생	성명/ 00학교/ 학생
	초중등학교 소속 교사	성명/ 00학교/ 교사
기타	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	성명

앞으로의 과제: 생명윤리위원회 심의

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 신청 가이드

●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nstitutional Review Board, IRB)

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, 개인정보보호,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·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·연구·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

● IRB 심의를 왜 받아야 하는가?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- 인간대상연구란?

1.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
2.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, 대면(對面)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
3.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: 연구대상자를 직접·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
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.

(현재 IRB 심의 통과를 의무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원은 국가기관의 RAD 직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)

※ IRB 심의와는 별개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및 사전동의 의무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.

한국연구재단 및 많은 대학기관 권장 사항

★ 5-1, 5-2 서식 중 한 가지 필수 제출

1. 연구계획서의 신청서 (필수, 서명 날인)

2. 연구진행 서약서 (필수, 서명 날인)

3. 연구계획서 요약 (필수)

4. 연구계획서 (필수, 별도서식 가능)

5-1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(해당 시, 별도서식 가능)

5-2. 서면동의면제 사유서 (해당 시)

6. 이력서 (필수, 별도서식 가능)

앞으로의 과제: 생명윤리위원회 심의

연구대상자 설명문

연구과제명 :

본 연구는 (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) 에 대한 연구입니다.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,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.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,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연구를 수행하는 000 연구책임자 또는 000 연구원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.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.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,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.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.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,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(또는 법정대리인)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

간략하게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기술함

2. 연구 참여 대상

연구 참여 대상자수를 특성과 함께 기술함

예시) 본 연구에는 0000 특성을 가진 00-00세 까지의 000 대상자 00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.

3. 연구 방법

모든 연구과정과 각종 검사법, 횡수 및 검사 등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 자세히 기술함

앞으로의 과제: 생명윤리위원회 심의

- ▶ 학회 별 자체 규정: **KAFLE 26권 3호** 이후 연구윤리규정에 다음과 같은 상세 규정(제2장 1조 3항)을 신설한다.

- 제2장 1조 3항 기관의 승인

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,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.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**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**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.

앞으로의 과제: 투고자 표절 관련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

▶ 학회 별 자체 규정: KAFLE 26권 3호 이후 연구윤리규정에 다음과 같은 상세 규정(제2장 2조 2항~4항)을 신설, 수정한다.

- 제2장 2조 2항 주객전도: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내용과 주장이 연구자의 저작물을 보조하지 않고 추가 되는 경우

3항 간접표절: 인용한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독창적 내용이 없고 이전 연구의 주장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

4항 자기표절: 본인이 출판한 본인의 연구결과를 다시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

5항 위조:

6항 변조:

7항 부당한 저자 표시:

8항 자료의 중복 사용: